

(나) 전출 순위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한다.

각 전출 순위별 순위 적용 후 동일한 경우는 아래 순으로 적용한다.

- ① 3자녀 이상 부양자(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)
- ② 별거 기간이 오래된 자
- ③ 별거 부부 교육공무원
- ④ 별거 부부공무원
- ⑤ 본도 장기 실근무자
- ⑥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
- ⑦ 근무성적이 상위인 자(동일한 경우 최근부터 역으로 적용)
- ⑧ 생년월일이 빠른 자

(다) 타시·도 교환(파견) 근무 기간 및 시기는 교환(파견)기간이 일치하고 동일 직종, 직급, 과목별 교류조건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1:1동수로 교환(파견)하며, 기간은 2년으로 한다.(연장불가)

(라) 교환(파견) 근무 대상자 선정 순위 및 기준은 아래에 의하여 경합될 경우 전출 순위에 의한다.

- ① 특별연구 과제 부여자: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, 도 단위 2등급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·박사 학위 소지자
- ②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: 노부모가 70세 이상이고, 노부모 주민등록이 교환(파견) 희망 시·도에 등재된 자
- ③ 원거리 근무지로 인하여 별거하는 자: 배우자가 교환(파견) 희망 시·도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
- ④ 기타 희망자

(마) 복귀 후 임지 지정은 교환(파견) 근무 전 근무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한 경우 당시 근무지와 동일한 시·군 또는 동일 급지에 배치하며, 교환(파견) 근무 시 취득한 벽지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.

- (3) 타시·도 전출, 교환(파견)근무 내신은 3월 1일자 정기전보 시 내신을 원칙으로 한다.
- (4) 타시·도 전출 희망 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속경력 3년 미만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시·도 전출불가 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 할 수 없다. 다만,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.
- (5) 근속기간 산정 시 계약제 교원 경력, 휴직기간(단,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별거 기간, 실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), 군경력, 타시·도 교환 근무경력은 제외하며, 경력산출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